

신안군의회 규칙 제7호

공포문

신안군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0.)
에서 의결된 신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신안군의회 의장

김현수

붙임 신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1부.

신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